

서울특별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의안 번호	3167
----------	------

2025. 12. 17.
주택공간위원회

I.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 10. 20. 이민석 의원 발의
 - 회부일자: 2025. 10. 23.
 -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33회 정례회 제4차 주택공간위원회 (2025. 12. 17. 상정·의결)

II. 제안설명 요지 (이민석 의원)

1. 제안이유

- 2012년부터 서울도서관 내에 ‘서울기록문화관’을 설치 · 운영해왔으나, 서울도서관 공간재배치 계획에 따라 해당 시설이 2025년 9월 30일자로 운영이 종료되어 실효성이 상실된 조항을 삭제하고,
- ‘서울기록문화관’의 관련 기능을 서울기록원으로 이전하여 전시 · 견학 · 교육프로그램 등의 운영에 대한 안정적 추진 근거를 마련함.

2. 주요내용

- 가. 서울기록문화관의 각 호의 업무를 서울기록원으로 이전하고, 전시 · 교육 · 체험 등 구체적 시민참여 프로그램으로 명시하여 안정적 추진 근거를 마련함(안 제11조).

나. 서울기록문화관 관련 조항을 삭제함(안 제22조).

III. 검토보고 요지 (윤은정 수석전문위원)

- 이 개정조례안은 2012년도부터 운영되던 ‘서울기록문화관’(이하 “기록문화관”)이 종료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 그 기능을 이관받는 ‘서울기록원’과 관련된 조문에 ‘전시·학술·체험’ 등의 구체적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명시하려는 것임.

① ‘서울기록문화관’ 근거 조항 삭제 관련

- 그간 서울시는 시민들에게 서울의 역사와 시정 변천사를 공유하기 위해 서울도서관 3층에 ‘기록문화관’을 설치·운영해 왔으나(검토보고서 복임1 참고), ‘24년 10월, 해당 공간을 키즈카페 등으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된 도서관 리모델링과 공간 재배치 계획¹⁾을 수립함에 따라 기록문화관은 ‘25년 9월자로 운영을 종료하고, 현재 기본구상 수립 후 실시설계를 추진 중임²⁾.

< 서울도서관 공간재배치 계획(안) >

<현재>		<공간재배치(안)>	
4층	세계자료실	사무공간	⇒ 어린이열람실 사무공간 근로자 휴게공간 등
3층	서울기록문화관	옛시장실	⇒ 키즈카페 옛시장실 프로그램실 ※ 서울기록문화관 : 기존 아카이빙 자료에 청년부상 제대군인, 재해, 어린이 프로그램 등 운영
2층	디지털자료실	일반자료실	
1층	장애인자료실		⇒ 일반자료실 (일반·세계·장애인자료 및 연속간행물 등)

*출처: “서울도서관 업무효율화를 위한 공간재배치 계획” p.5 (행정1부시장방침 제211호, 2024.10.16.)

1) “서울도서관 업무효율화를 위한 공간재배치 계획” (행정1부시장방침 제211호, 지식문화과-9276, 2024.10.16.)

2) 2024년 수립 방침에 키즈카페 일부 공간에 재개관을 표기하였으나, 2025년 서울도서관에서 실시한 ‘서울도서관 공간재배치 기본구상 용역’에 따르면 공간재배치 계획에 서울기록문화관은 존재하지 않음에 따라, 사실상 운영은 종료된 사항임.

- 이에 디지털도시국은 그간 전시해오던 콘텐츠와 관련 장비를 서울기록원으로 이관하기로 결정함³⁾에 따라 「서울특별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 상 기록문화관 관련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p>제22조(서울기록문화관) ① 시장은 중요 시정기록의 전시·홍보를 위해 서울기록문화관을 설치·운영 할 수 있다.</p> <p>② 서울기록문화관은 다음의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p> <p>1. 시의 행정 변천사와 각종 중요 기록물의 전시·홍보</p> <p>2. 시정 주요문서 열람 서비스 제공</p> <p>3. 견학·교육·체험 등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p> <p>4. 그 밖의 공공·민간 기록의 임대·위탁 전시</p> <p>③ 서울기록문화관의 개관시간과 휴관일은 「서울도서관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운영 할 수 있다.</p>	<p><삭 제></p>

- 기록문화관의 콘텐츠를 서울기록원으로 이관하여 기존 기능을 서울기록원으로 일원화하려는 것(검토보고서 복임²⁾)은 기록 전시·체험 기능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조치로 이해되어 조례의 개정에는 이견이 없음.
- 다만,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기록문화관의 누적 방문자는 2012년 이후 90만명을 상회하고, 일평균 방문자는 285명임에도⁴⁾ 시민 의견 수렴 없이 운영 종료를 결정한 점과, 대체 전시공간을 인근에 마련하지 않은 점은 절차상 미비한 측면이 있어 보임.

3) “서울기록문화관 운영 종료 계획” (정보시스템과-13720, 2025.5.27.)

4) 디지털도시국 자료를 인용한 것이나, 서울도서관 내 입지함으로써 도서관, 디지털시장실 등을 목적으로 방문한 시민이 서울기록문화관을 방문한 것인지, ‘기록문화관’을 주 목적으로 방문한 것인지는 구분되지 않으며, 기록문화관을 10여년 운영한 평가에 대해서는 방문자 수외 별도의 내용이 확인되지 않음.

< 서울기록문화관 누적 방문자 수 >

('25. 9. 30. 기준)

연 도	합계	2025	2024	2023	2022	2021	2020	2019	2018	2017	2016	'12~'15
방문자(명)	913,279	61,223	76,228	70,836	29,253	-	6,288	90,117	83,812	89,316	86,267	319,939
개관일(일)	3,201	223	298	300	201	-	43	299	297	292	300	948
일평균(명)	285	275	256	236	146	-	146	301	282	306	288	337

*출처: 디지털도시국 정보시스템과 제출자료(2025.10.16.)

② ‘서울기록원’의 시민참여 프로그램 관련

- 한편 안 제11조는 조문 제목을 기준 “시민편의 시설 운영”에서 실제 기능을 반영한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으로 수정하면서, 기록문화관 기능 이관으로 보강되는 전시·견학·교육·체험 등 시민참여 프로그램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음.

현 행	개 정 안
<p>제11조(시민편의 시설 운영) 서울기록원은 투명한 시정구현과 기록물의 가치공유와 홍보를 위해 열람·전시·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p> <p><신 설></p> <p><신 설></p> <p><신 설></p>	<p>제11조(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 가치공유 및 홍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요 기록물의 전시 및 관련 콘텐츠 구축 견학·교육·체험 등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그 밖에 기록물 홍보에 필요한 사항

- 그간 현행 조례 제11조는 ‘시설’ 위주의 물리적 공간 운영의 의미로 이해되는 상황이나, 서울기록원은 이미 전시·체험·교육 등 다양한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었고(검토보고서 불임3 참고), 여기에 ‘서울기록문화

관'의 기능이 이관되면서 구획된 공간(시설) 관리의 의미보다 유연하고 확장된 방식인 '프로그램 운영'으로 개정하려는 취지로 해석됨.

- 향후 서울기록원은 중요 기록물의 전시, 과학·교육·체험 등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발전하는 디지털 기술과 AI 수준에 부합하는 내실 있는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고, 특히 청소년 등의 교육적 측면에서도 만족도와 활용도를 제고하여야 하겠으며, 도심에서 서북권으로 이동된 만큼 시민들의 접근성 개선을 위한 셔틀버스 운영 등 이용자 편의 강화 방안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겠음.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원안 가결(출석위원 전원 찬성)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서울특별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민석 의원 발의)

의안 번호	3167
----------	------

발의년월일: 2025년 10월 20일
발의자: 이민석 의원(1명)
찬성자: 강석주, 고광민, 김영철,
김원태, 김재진, 김종길,
김태수, 김형재, 남궁역,
남창진, 민병주, 윤기섭,
윤종복, 이성배, 임춘대,
허훈, 홍국표, 황유정
의원(18명)

1. 제안이유

- 2012년부터 서울도서관 내에 ‘서울기록문화관’을 설치·운영해왔으나, 서울도서관 공간재배치 계획에 따라 해당 시설이 2025년 9월 30일자로 운영이 종료되어 실효성이 상실된 조항을 삭제하고,
- ‘서울기록문화관’의 관련 기능을 서울기록원으로 이전하여 전시·전학·교육프로그램 등의 운영에 대한 안정적 추진 근거를 마련함.

2. 주요내용

- 가. 서울기록문화관의 각 호의 업무를 서울기록원으로 이전하고, 전시·교육·체험 등 구체적 시민참여 프로그램으로 명시하여 안정적 추진 근거를 마련함(안 제11조).
- 나. 서울기록문화관 관련 조항을 삭제함(안 제22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 제목 “(시민편의 시설 운영)”을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가치공유와 홍보를 위해 열람·전시·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를 “가치공유 및 홍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중요 기록물의 전시 및 관련 콘텐츠 구축
2. 견학·교육·체험 등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3. 그 밖에 기록물 홍보에 필요한 사항

제22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行	개 정 安
<p>제11조(<u>시민편의 시설 운영</u>) 서울 기록원은 투명한 시정구현과 기 록물의 가치공유와 홍보를 위해 <u>열람 · 전시 · 문화 · 교육 프로</u> <u>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u></p> <p><u><신 설></u></p> <p><u><신 설></u></p> <p><u><신 설></u></p>	<p>제11조(<u>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u>) ----- ---- <u>가치공유 및 홍보를 위해</u> <u>다음 각 호의 프로그램을 운영</u> <u>한다.</u></p> <p>1. 중요 기록물의 전시 및 관련 <u>콘텐츠 구축</u></p> <p>2. 견학 · 교육 · 체험 등 시민참 여 프로그램 운영</p> <p>3. 그 밖에 기록물 홍보에 필요 한 사항</p> <p><u><삭 제></u></p>
<p>제22조(서울기록문화관) ① 시장 <u>은 중요 시정기록의 전시 · 홍보</u> <u>를 위해 서울기록문화관을 설치</u> <u>· 운영 할 수 있다.</u></p> <p>② 서울기록문화관은 다음의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p> <p>1. 시의 행정 변천사와 각종 중 요 기록물의 전시 · 홍보</p> <p>2. 시정 주요문서 열람 서비스 제공</p> <p>3. 견학 · 교육 · 체험 등 시민참 여 프로그램 운영</p> <p>4. 그 밖의 공공 · 민간 기록의</p>	

현 행	개 정 안
<p><u>임대 · 위탁 전시</u></p> <p><u>③ 서울기록문화관의 개관시간</u></p> <p><u>과 휴관일은 「서울도서관 운영</u></p> <p><u>에 관한 규정」 제3조 및 제4조</u></p> <p><u>에 따라 운영 할 수 있다.</u></p>	

서울특별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대상 사유서

1. 판단 근거

- 서울특별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제11조(시민편의 시설 운영)의 내용을 수정 및 신설하여, 기존 서울기록문화관의 기능을 서울기록원으로 이관하고, 서울도서관 공간재 배치 계획에 따라 서울기록문화관의 운영이 종료되어 실효성이 상실된 제22조(서울기록문화관)를 삭제한 것으로, 별도의 비용을 수반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2.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과

재정분석과장 이 선 희

추계세제팀장 김 중 헌

추계분석관 김 진 형

☎ 02-2180-7954

e-mail : kjh0816@seoul.go.kr

※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